

인천광역시의회 규칙 (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가. 의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나 방청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 나. 회의운영상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장이 이송하도록 함(제32조)
- 다. 의원이나 공무원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토론을 포함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각·언어 및 절단장애 의원 등의 발언시간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 라. 5분 자유발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6명까지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되, 6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제38조의2)

- 마. 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으로 보도록 함(제48조)
- 바.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함(제50조)
- 사. 자구정정 요구는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회의록 내용은 삭제를 금지하며, 자구정정이나 취소발언 내용까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제52조)
- 아.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53조의2)
- 자.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 외에도 일괄질의도 허용함(제59조)
- 차. 시정질문은 5가지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두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도록 함(제73조의2)
- 카.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방송은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88조의2)
- 타. 중계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회의, 공청회 등을 대상으로 하되, 시민 관심사항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영상 자료는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을 허용함(제88조의3)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2013. 12. 20.)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이 성 렵

2013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3호

인 천 광 역 시 의 회 회 의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15호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6. 본회의가 요구하는 위원회 개최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송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 중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시간”을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토론을 포함한다) 시간”으로 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질문
에 대한 일괄답변”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
위”로 한다.

③ 의장은 발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각이나 언어장애 또는 절단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하되, 신청 의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의원 수와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최후의”를 “최후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정안 보다”를 수정안보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 개 있을 때에는”을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2조제1항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발간, 배부와 보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회수”를 “횡수”로 하고,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로 하며, “의결한 때는”을 “의결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일괄질문·답변과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일괄질문·답변, 일괄질문 서면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 서면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하여 할 수 있으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일괄질문, 서면질문 순으로 한다. 다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확보액 범위에서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비공개 회의를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

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정연설을 포함한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공청회,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